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27
----------	-------

발의연월일 : 2025. 9. 9.

발 의 자 : 고민정 · 강경숙 · 김영호
민형배 · 정을호 · 서미화
김 윤 · 손 술 · 이성운
김준혁 · 박정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과 같은 인쇄물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고 이를 보장함. 현재 정당 현수막 내용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함. 이 때문에 정당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으로 오인됨.

정당 현수막일지라도 현수막 일반을 규율하는 옥외광고물법 적용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임. 최근 전국에 옥외광고물법 상 금지광고물인 인종차별적 내용의 현수막이 다수 부착됐음에도, 정당 명義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판단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계도하지 않는 탈법적 상황이 발생했음.

이에 현행법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에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

고물로 정한 내용을 포함한 홍보행위를 제외하려 함. 입법 미비점을 보완해 정당과 지자체의 혼선을 막고 탈법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임(안 제37조제2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생략)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헌법과 같은)
②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 ----- ----- ----- ----- ----- ----- ----- ----- ----- <u>. 이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u>
③ (생략)	③ (헌법과 같은)